



심의/등록	(주) 퍼시스	사규 번호	퍼일반규-12-00
	공시규정		페이지
			1 / 8

제정부서	기획실	개정차수	제정
제정일자	2007년 5월 2일	개정일자	2009년 8월 31일

목차

<p>제 1 장 총 칙</p> <p>제 1조 목적</p> <p>제 2조 적용범위</p> <p>제 3조 용어의 정의</p> <p>제 2 장 공시구분 및 공시사항</p> <p>제 4조 공시구분</p> <p>제 5조 공시사항</p> <p>제 3 장 공시통제활동과 운영</p> <p>제 6조 공시절차</p> <p>제 7조 담당부서</p> <p>제 8조 공시담당자</p> <p>제 9조 공시책임자</p> <p>제 10조 대표이사</p> <p>제 4 장 공시위험의 평가와 관리</p> <p>제 11조 공시위험의 관리</p> <p>제 12조 담당부서</p> <p>제 13조 공시담당자</p> <p>제 5 장 임직원의 불공정거래 금지</p> <p>제 14조 일반원칙</p> <p>제 15조 미공개 중요정보의 관리</p> <p>제 16조 계열회사의 미공개중요정보</p> <p>제 17조 단기매매차익의 반환등</p> <p>제 6 장 기타의 공시통제</p> <p>제 18조 보도자료의 배포 및 언론사의 취재</p> <p>제 19조 시장풍문</p>	<p>제 20조 정보제공 요구</p> <p>부칙</p> <p>제 1조 시행일</p>
--	--

심의/등록	(주) 퍼시스	사규 번호	파일반규-12-00
	공시규정		페이지
			2 / 8

제 1 장 총 칙

제 1조 (목적) 이 규정은 주식회사 퍼시스(이하 ‘당사’라 한다.)의 모든 공시정보가 관련법규에 따라 정확하고 완전하며, 공정하고 시의적절하게 공시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임직원의 불공정거래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시관련 업무 및 절차, 공시정보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적용범위) 공시업무의 수행 및 공시정보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법령, 관련규정 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3조 (용어의 정의)

- ① “공시정보”라 함은 당사의 경영 및 재산 등에 관하여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으로 관련 법규 및 규정에 기재된 공시사항을 말한다.
- ② 관련 법규 및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의 증권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이하 “발행공시규정”이라 한다),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의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이하 “공시규정”이라 한다) 등 관련 법규에서 정하고 있는 공시사항 및 그와 관련된 정보를 말한다.
- ③ “공시문서”라 함은 공시정보의 공시를 위하여 제출한 신고 및 보고문서(전자문서 포함)와 이에 첨부된 문서를 말한다.
- ④ “공시통제조직”이라 함은 이 규정에 의해 공시정보의 생성, 수집, 검토, 공시서류의 작성, 승인 등 공시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대표이사, 공시책임자, 공시담당부서 및 공시정보의 생성과 관련된 사업부서를 의미한다.
- ⑤ “공시책임자”라 함은 대표이사의 지명을 받아 당사의 공시업무를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자를 말한다.
- ⑥ “공시담당자”라 함은 공시에 관한 전문적 지식을 갖춘 자로서 공시책임자에 의해 지정된 자를 말한다.
- ⑦ “담당부서”라 함은 당사의 공시정보의 발생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 ⑧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관하여는 이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법규 및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의한다.

제 2 장 공시구분 및 공시사항

제 4조 (공시구분) 공시는 정기공시, 수시공시, 공정공시, 조회공시 및 자율공시로 구분한다.

심의/등록	(주) 퍼시스	사규번호	파일반규-12-00
	공시규정		페이지 3 / 8

제 5조 (공시사항)

- ① “정기공시” 라 함은 당사의 사업·재무상황 및 경영실적 등 기업내용 전반에 관한 사항을 법 제159조, 제160조, 제165조, 영 제168조, 제170조, 발행공시규정 제4-3조, 공시규정 제21조에 따라 금융위 또는 거래소에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분기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1]에 따른다.
- ② “수시공시” 라 함은 주요경영사항의 공시로서 당사의 경영활동과 관련하여 투자이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사실 또는 결정내용 등을 공시규정 제7조에 따라 거래소에 신고 또는 공시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2]에 따른다.
- ③ “공정공시” 라 함은 당사가 관련법규상 공시의무 대상이 되지 않는 정보나 공시시한이 도래하지 않은 정보 등을 특정인에게 선별제공하는 경우 공시규정 제15조 및 제16조와 거래소의 공정공시운영기준에 따라 당해 정보를 일반투자자가 동시에(또는 특정인에 대한 선별제공 전까지) 알 수 있도록 거래소에 공시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3]에 따른다.
- ④ “조회공시” 라 함은 당사와 관련한 풍문 및 보도의 사실여부 확인이나 중요정보의 유무에 대하여 공시규정 제12조에 의거 거래소로부터 요청받아 공시하는 것을 말한다.
- ⑤ 관련 법규의 변경에 따라 [별표1], [별표2] 및 [별표3]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공시담당자는 공시책임자의 승인을 얻어 임직원에게 공지한다.


제 3 장 공시통제활동과 운영

제 6조 (공시절차)

- ① 공시담당자는 공시사항 발생시 담당부서로부터 공시자료를 접수한다.
- ② 공시담당자는 접수한 공시자료를 바탕으로 공시문서를 작성하여 공시책임자에게 보고한다.
- ③ 공시책임자는 공시할 사항을 대표이사에게 보고한다. 단 수시공시, 공정공시 및 조회공시에 관한 사항은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 ④ 공시담당자는 보고 완료된 공시문서를 관련기관에 제출한다.

제 7조 (담당부서)

- ① 각 담당부서의 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시담당자에게 적시에 이에 관한 자료를 전달하여야 한다.
 1. 공시관련법규에서 정한 공시사항이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2. 회사의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써 공시여부에 대한 판단이 불분명한 경우
 3. 이미 공시된 사항의 취소 또는 변경사유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심의/등록	(주) 퍼시스	사규 번호	파일반규-12-00
	공시규정		페이지
			4 / 8

4. 기타 공시책임자 또는 공시담당자의 요구를 받은 경우

- ② 전 항의 공시정보를 전달하는 경우 관련 내용과 필요한 증빙 및 참고자료 등에 관한 사본을 문서로 공시담당자에게 전달하고 이에 관한 원본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문서 외의 적절한 방법으로 전달하되 사후에 관련 내용의 사본을 문서로 전달할 수 있다.
- ③ 공시자료를 공시담당자에게 전달하는 경우 별지 서식[1]의 확인서를 작성, 날인하여 공시담당자에게 제출한다.


제 8조 (공시담당자)

- ① 공시담당자는 공시사항의 공시실행을 위하여 공시사항과 공시일정 등을 확인하고 담당부서별 업무분장을 문서 또는 사내 이메일로 각 담당부서에 전달하여야 한다.
- ② 공시담당자는 각 담당부서에서 전달 받은 내용 등을 종합하여 관련법규에서 정한 서식 및 기재방법에 따라 공시문서를 작성하여 공시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공시담당자는 공시책임자와 대표이사의 승인을 얻어 법정제출기한 내에 공시를 실행하여야 한다. 단, 대표이사의 승인에 있어서 본 규정 제 6조 ③항에 준한다.
- ④ 공시문서를 공시책임자 및 대표이사에게 제출하는 경우 별지 서식[2]의 공시문서점검표를 작성, 날인하여 첨부한다.
- ⑤ 수시공시와 관련하여 담당부서로부터 공시사항 등에 관한 자료를 전달 받은 경우 공시담당자는 즉시 당해 자료가 공시사항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검토결과 수시공시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시공시문서를 작성하여 공시책임자의 승인을 얻어 공시를 실행하여야 한다.
- ⑥ 거래소로부터 조회공시 요구를 받은 경우 공시담당자는 즉시 담당부서로부터 사실 여부 및 중요정보의 유무 등을 확인하고 공시문서를 작성하여 공시책임자의 승인을 얻어 조회공시에 응하여야 한다.

제 9조 (공시책임자)

- ① 공시책임자는 공시실행에 필요한 업무추진 현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 ② 공시책임자는 공시담당자로부터 제출 받은 공시문서가 관련법규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와 공시문서를 통해 공시되는 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등에 대하여 검토하고 이를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대표이사의 승인을 얻어 공시담당자에게 공시를 실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단, 대표이사의 승인에 있어서 본 규정 제 6조 ③항에 준한다.

제 10조 (대표이사) 대표이사는 공시책임자로부터 보고 받은 공시문서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직접 확인, 검토 후 승인하여야 하며 관련 법규상 필요한 인증을 하여야 한다.

심의/등록	(주) 퍼시스	사규 번호	파일반규-12-00
	공시규정		페이지
			5 / 8

제 4 장 공시위험의 평가와 관리


제 11조 (공시위험의 관리) 공시책임자는 공시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공정성 및 적시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공시위험이 적시에 점검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1. 재무정보 오류 : 회계처리상의 실수나 담당자간 의사소통의 불일치 등에 의해 야기되는 실제 재무상태와 공시내용과의 불일치 등으로 인한 위험
2. 서식기재의 미비, 기재 오류 : 기재요령 등에 대한 이해부족, 오타 등으로 공시관련 서식상 요구되는 사항에 대한 기재누락 또는 오류로 인한 위험
3. 공시내용의 불명확성, 불충분성, 부정확성 : 일반인이 이해하기 힘든 전문용어, 약어의 사용, 관련 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 부족, 실제 발생사실과 공시내용과의 불일치 등으로 인한 위험
4. 관련법규상의 공시기한 준수위무의 불이행 : 정보전달의 지연, 결재의 지연, 공시기한에 대한 오인 등으로 공시기한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의 위험
5. 공시사항의 누락, 은폐, 축소 : 공시의무사항을 이해하지 못한 공시누락, 회사에 부정적인 정보 등에 대한 은폐, 축소로 인한 위험
6. 예측정보의 공시에 따른 위험 : 예측정보가 합리적 근거나 가정에 기초하지 않았거나 고의의 허위기재, 중요한 사항의 누락 등으로 인한 위험
7. 미공개 정보의 유출 : 일반에 공개되지 않은 정보가 내부 임직원에게 의해 선별적으로 제공되거나, 언론과의 접촉 등 비정상적인 경로를 통해 유출되는 경우의 위험
8. 공시제도의 변경에 따른 위험 : 공시관련법규의 변경, 정부정책의 변경, 회사가 속해 있는 거래소시장의 변경, 관련 감독기관 및 시장운영기관 등의 담당자 또는 실무 변경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험
9. 공시담당자의 변경 : 공시담당자의 변경에 따른 정보승계의 단절, 공시의무 이행의 계속성 상실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험
10. 기타 공시정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

제 12조 (담당부서) 각 담당부서는 공시 관련업무의 수행과정에서 공시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를 즉시 공시담당부서에 전달하고 공시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공시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 13조 (공시담당자) 공시담당자는 회사 전체적인 차원에서 공시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공시위험에 대한 점검 및 관리업무를 총괄한다.

제 5 장 임직원의 불공정거래 금지

심의/등록	(주) 퍼시스	사규 번호	파일반규-12-00
	공시규정		페이지
			6 / 7

제 14조 (일반원칙) 임직원은 법 제 174 조 제 1 항에서 규정하는 업무등과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이하 '미공개중요정보' 라 한다)를 법 제 172 조 제 1 항에서 규정하는 특정증권등(이하 '특정증권등' 이라 한다)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15조 (미공개 중요정보의 관리) 대표이사 또는 공시책임자는 다음 각호에 따라 미공개 중요정보가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미공개중요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문서는 허용된 임직원만이 사용할 수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되어야 한다.
2. 임직원은 미공개중요정보를 엘리베이터, 복도 등 타인이 대화내용을 들을 수 있는 장소에서 논의하여서는 안된다.
3. 미공개중요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문서는 공개적인 장소에 비치되어서는 안되며, 문서의 폐기시에는 분쇄등 적절한 방법을 통해 문서의 내용을 파악할 수 없도록 폐기되어야 한다.
4. 임직원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미공개중요정보를 외부뿐만 아니라 회사 내에서도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5. 미공개중요정보와 관련한 팩스, 컴퓨터 통신 등에 의한 문서의 전자송신은 보안이 보장된 상태에서만 수행되어야 한다.
6. 미공개중요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문서의 불필요한 복사는 가급적 피하고 문서는 회의실 또는 업무 관련 장소에서 신속히 정리되어야 한다.
7. 미공개중요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문서 사본의 여분은 분쇄 등의 방법으로 완전하게 파기하여야 한다.
 - ① 임직원은 회사의 미공개중요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거래의 상대방, 법률대리인, 외부감사인 등과 업무상 불가피하게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유하게 되는 경우, 사전에 공시책임자 또는 공시담당부서장 등에게 문의하여 필요한 한도내에서만 공유토록 하여야 한다.
 - ② 임직원이 의도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공개중요정보를 누설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시담당부서장에게 이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전 항의 통지를 받은 공시담당부서장은 당해 사실을 공시책임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 공정공시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 16조 (계열회사의 미공개중요정보) 임직원에 대한 당사의 계열회사의 미공개중요정보의 이용행위 금지에 관하여는 제 14 조 내지 제 15 조를 준용한다.

제 6 장 기타의 공시통제

제 17조 (보도자료 배포 및 언론사의 취재)

- ① 각 담당부서의 팀장은 언론사 등 대중매체에 보도자료를 배포하고자 하는 경우 공시담당자의 사전 검토를 거쳐야 한다.

심의/등록	(주) 퍼시스	사규 번호	파일반규-12-00
	공시규정		페이지 7 / 7

- ② 언론사 등 대중매체에서 당사에 취재 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대표이사 및 공시책임자가 응할 수 있다. 단, 필요한 경우 공시책임자가 취재에 응할 자를 지정할 수 있다.

제 18조 (시장풍문) 당사는 시장풍문에 대하여 거래소의 적법한 요청 없이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제 19조 (정보제공 요구)

- ①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으로부터 회사와 관련한 정보공개를 요구 받은 경우 공시책임자는 당해 요구의 적법성을 검토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② 전 항의 결정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공시책임자는 제공되는 정보가 투자판단 및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법무담당부서 또는 외부 법률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공정공시 대상에 해당하거나 투자판단 및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인 경우에는 당해 정보제공을 요구한 자에 대한 정보 제공과 동시에(또는 정보 제공 전까지) 일반에게 공개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부 칙

제 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문서번호	
수신	
참조	-
건명	

공시사항 확인서

200 년 월 일

담당	심의			승인
	I	II	III	

◆ 공시할 사항

공시구분	주요 내용	비고
정기공시		
수시공시		
조회공시		

본 자료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상당한 주의의무를 다하여 작성되었으므로 공시자료를 이용하는 자에게 중대한 오류를 유발시킬 만한 중요한 사실의 누락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소 속 :

담당자:


공시문서 점검표

점검목적	점검내용	확인결과	
		적합	부적합
계산검증	숫자에 대한 계산검증을 수행하여 정확성을 확인하였는가?		
문서검사	문서오류검사를 실시하여 작성내역의 오류여부를 확인하였는가?		
지침준수	작성지침에 따라 공시항목별로 요구되는 기재사항을 정확히 모두 작성하였는가?		
표기단위	표기단위는 작성지침에 따라 기재하였는가?		
대사확인	원본데이터와의 대사를 통해 일치여부를 확인하였는가?		
대사확인	재무정보를 표시하는 공시항목의 경우 장부 혹은 감사보고서 등과 대사하여 일치여부를 확인하였는가?		
대사확인	기(既) 공시한 자료와 대사하여 공시자료 간의 일치여부를 확인하였는가?		
대사확인	회계연도간 비교표시되는 공시항목의 경우, 전년도/전반기 보고서 등과 대사하여 공시자료 간의 일치여부를 확인하였는가?		
기준시점	최종 확정되지 않은 데이터로 작성한 경우, 잠정치임을 명시하였는가?		
완전성	"-" (해당사항 없음)로 표시하는 공시항목에 대해 그 완전성을 확인하였는가?		
수정보완	현업부서로 부터 취합한 자료에 수정/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존재하는 경우, 수정/보완된 자료를 수취하여 반영하였는가?		
기한준수	관계법령에 따른 “공시일정” 을 준수하여 취합 작성하였는가?		

제출된 공시 문서는 현업부서에서 받은 자료를 기초로 관계 법규 및 규정에 따라 신의 성실의 원칙에 의거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소속 :

담당 : 서명


심의/등록	(주) 퍼시스	사규 번호	퍼일반규-13-000
	공시규정	페이지	1 / 6

제정부서	기획실	개정차수	제정
제정일자	2007년 5월 2일	개정일자	-

목차

<p>제 1 장 총 칙</p> <p>제 1조 목적</p> <p>제 2조 적용범위</p> <p>제 3조 용어의 정의</p> <p>제 2 장 공시구분 및 공시사항</p> <p>제 4조 공시구분</p> <p>제 5조 공시사항</p> <p>제 3 장 공시절차</p> <p>제 6조 공시절차</p> <p>제 7조 담당부서</p> <p>제 8조 공시담당자</p> <p>제 9조 공시책임자</p> <p>제 10조 대표이사</p> <p>제 4 장 공시위험의 평가와 관리</p> <p>제 11조 공시위험의 관리</p> <p>제 12조 담당부서</p> <p>제 13조 공시담당자</p> <p>제 5 장 기타의 공시통제</p> <p>제 14조 보도자료의 배포 및 언론사의 취재</p> <p>제 15조 시장풍문</p> <p>제 16조 정보제공요구</p> <p>부칙</p> <p>제 1조 시행일</p>	
---	--



심의/등록	(주) 퍼시스	사규 번호	퍼일반규-13-000
	공시규정		페이지 2 / 6

제 1 장 총 칙

제 1조 (목적) 이 규정은 주식회사 퍼시스(이하 ‘당사’ 라 한다.)의 모든 공시정보가 관련법규에 따라 정확하고 완전하며, 공정하고 시의적절하게 공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시관련 업무 및 절차에 관한 사항과 공시정보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적용범위) 공시업무의 수행 및 공시정보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법령, 관련규정 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3조 (용어의 정의)

- ① “공시정보”라 함은 당사의 경영 및 재산 등에 관하여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으로 관련 법규 및 규정에 기재된 공시사항을 말한다.
- ② 관련 법규 및 규정은 증권거래법(이하 “법”), 증권거래법 시행령(이하 “영”),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이하 “발행공시규정”) 및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이하 “공시규정”)을 말한다.
- ③ “공시문서”라 함은 공시정보의 공시를 위하여 제출한 신고 및 보고문서(전자문서 포함)와 이에 첨부된 문서를 말한다.
- ④ “공시책임자”라 함은 대표이사의 지명을 받아 당사의 공시업무를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자를 말한다.
- ⑤ “공시담당자”라 함은 공시에 관한 전문적 지식을 갖춘 자로서 공시책임자에 의해 지정된 자를 말한다.
- ⑥ “담당부서”라 함은 당사의 공시정보의 발생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 ⑦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관하여는 이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법규 및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의한다.

제 2 장 공시구분 및 공시사항

제 4조 (공시구분) 공시는 정기공시, 수시공시, 공정공시 및 조회공시로 구분한다.

제 5조 (공시사항)

- ① 정기공시는 당사의 사업, 재무상황 및 경영실적 등 기업내용 전반에 관한 사항을 관련 법규 및 규정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이하 “금감위”) 또는 증권선물거래소(이하 “거래소”), 금감위와 거래소를 통합하여 이하 “관련기관”이라 함)에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분기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1]에 따른다.



심의/등록	(주) 퍼시스	사규 번호	퍼일반규-13-000
	공시규정		페이지 3 / 6

- ② 수시공시는 주요경영사항의 공시로써 당사의 경영활동과 관련하여 투자이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사실 또는 결정내용 등을 관련 법규 및 규정에 따라 관련기관에 신고 또는 공시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2]에 따른다.
- ③ 공정공시는 당사가 관련 법규상 공시의무 대상이 되지 않는 정보나 공시시한이 도래하지 않은 정보 등을 특정인에게 선별 제공하는 경우 관련 법규 및 규정에 따라 당해 정보를 일반 투자자가 동시에(또는 특정인에 대한 선별 제공 전까지) 알 수 있도록 공시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3]에 따른다.
- ④ 조회공시는 회사와 관련한 품문 및 보도의 사실여부 확인이나 중요정보의 유무에 대하여 거래소로부터 요청받아 공시하는 것을 말한다.
- ⑤ 관련 법규의 변경에 따라 [별표1], [별표2] 및 [별표3]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공시담당자는 공시책임자의 승인을 얻어 임직원에게 공지한다.

제 3 장 공시절차

제 6조 (공시절차)

- ① 공시담당자는 공시사항 발생시 담당부서로부터 공시자료를 접수한다.
- ② 공시담당자는 접수한 공시자료를 바탕으로 공시문서를 작성하여 공시책임자에게 보고한다.
- ③ 공시책임자는 공시할 사항을 대표이사에게 보고한다. 단 수시공시, 공정공시 및 조회공시에 관한 사항은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 ④ 공시담당자는 보고 완료된 공시문서를 관련기관에 제출한다.

제 7조 (담당부서)

- ① 각 담당부서의 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시담당자에게 적시에 이에 관한 자료를 전달하여야 한다.
 - 1. 공시관련법규에서 정한 공시사항이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 2. 회사의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써 공시여부에 대한 판단이 불분명한 경우
 - 3. 이미 공시된 사항의 취소 또는 변경사유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 4. 기타 공시책임자 또는 공시담당자의 요구를 받은 경우
- ② 전 항의 공시정보를 전달하는 경우 관련 내용과 필요한 증빙 및 참고자료 등에 관한 사본을 문서로 공시담당자에게 전달하고 이에 관한 원본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문서 외의 적절한 방법으로 전달하되 사후에 관련 내용의 사본을 문서로 전달할 수 있다.
- ③ 공시자료를 공시담당자에게 전달하는 경우 별지 서식[1]의 확인서를 작성, 날인하여 공시담당자에게 제출한다.



심의/등록	(주) 퍼시스	사규 번호	퍼일반규-13-000
	공시규정		페이지 4 / 6

제 8조 (공시담당자)

- ① 공시담당자는 공시사항의 공시실행을 위하여 공시사항과 공시일정 등을 확인하고 담당부서 별 업무분장을 문서 또는 사내 이메일로 각 담당부서에 전달하여야 한다.
- ② 공시담당자는 각 담당부서에서 전달 받은 내용 등을 종합하여 관련법규에서 정한 서식 및 기재방법에 따라 공시문서를 작성하여 공시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공시담당자는 공시책임자와 대표이사의 승인을 얻어 법정제출기한 내에 공시를 실행하여야 한다. 단, 대표이사의 승인에 있어서 본 규정 제 6조 ③항에 준한다.
- ④ 공시문서를 공시책임자 및 대표이사에게 제출하는 경우 별지 서식[2]의 공시문서점검표를 작성, 날인하여 첨부한다.
- ⑤ 수시공시와 관련하여 담당부서로부터 공시사항 등에 관한 자료를 전달 받은 경우 공시담당자는 즉시 당해 자료가 공시사항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검토결과 수시공시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시공시문서를 작성하여 공시책임자의 승인을 얻어 공시를 실행하여야 한다.
- ⑥ 거래소로부터 조회공시 요구를 받은 경우 공시담당자는 즉시 담당부서로부터 사실 여부 및 중요정보의 유무 등을 확인하고 공시문서를 작성하여 공시책임자의 승인을 얻어 조회공시에 응하여야 한다.

제 9조 (공시책임자)


- ① 공시책임자는 공시실행에 필요한 업무추진 현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 ② 공시책임자는 공시담당자로부터 제출 받은 공시문서가 관련법규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와 공시문서를 통해 공시되는 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등에 대하여 검토하고 이를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대표이사의 승인을 얻어 공시담당자에게 공시를 실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단, 대표이사의 승인에 있어서 본 규정 제 6조 ③항에 준한다.

제 10조 (대표이사) 대표이사는 공시책임자로부터 보고 받은 공시문서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직접 확인, 검토 후 승인하여야 하며 관련 법규상 필요한 인증을 하여야 한다.

제 4 장 공시위험관리

제 11조 (공시위험의 관리) 공시책임자는 공시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공정성 및 적시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공시위험이 적시에 점검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1. 재무정보 오류 : 회계처리상의 실수나 담당자간 의사소통의 불일치 등에 의해 야기되는 실제 재무상태와 공시내용과의 불일치 등으로 인한 위험
2. 서식기재의 미비, 기재 오류 : 기재요령 등에 대한 이해부족, 오타 등으로 공시관련 서식상 요구되는

심의/등록	(주) 퍼시스	사규 번호	파일반규-13-000
	공시규정		페이지
			5 / 6

사항에 대한 기재누락 또는 오류로 인한 위험

3. 공시내용의 불명확성, 불충분성, 부정확성 : 일반인이 이해하기 힘든 전문용어, 약어의 사용, 관련 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 부족, 실제 발생사실과 공시내용과의 불일치 등으로 인한 위험
4. 관련법규상의 공시기한 준수의무의 불이행 : 정보전달의 지연, 결재의 지연, 공시기한에 대한 오인 등으로 공시기한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의 위험
5. 공시사항의 누락, 은폐, 축소 : 공시의무사항을 이해하지 못한 공시누락, 회사에 부정적인 정보 등에 대한 은폐, 축소로 인한 위험
6. 예측정보의 공시에 따른 위험 : 예측정보가 합리적 근거나 가정에 기초하지 않았거나 고의의 허위기재, 중요한 사항의 누락 등으로 인한 위험
7. 미공개 정보의 유출 : 일반에 공개되지 않은 정보가 내부 임직원에게 의해 선별적으로 제공되거나, 언론과의 접촉 등 비정상적인 경로를 통해 유출되는 경우의 위험
8. 공시제도의 변경에 따른 위험 : 공시관련법규의 변경, 정부정책의 변경, 회사가 속해 있는 거래소시장의 변경, 관련 감독기관 및 시장운영기관 등의 담당자 또는 실무 변경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험
9. 공시담당자의 변경 : 공시담당자의 변경에 따른 정보승계의 단절, 공시의무 이행의 계속성 상실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험
10. 기타 공시정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

제 12조 (담당부서) 각 담당부서는 공시 관련업무의 수행과정에서 공시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를 즉시 공시담당부서에 전달하고 공시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공시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 13조 (공시담당자) 공시담당자는 회사 전체적인 차원에서 공시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공시위험에 대한 점검 및 관리업무를 총괄한다.


제 5 장 기타의 공시통제

제 14조 (보도자료 배포 및 언론사의 취재)

- ① 각 담당부서의 팀장은 언론사 등 대중매체에 보도자료를 배포하고자 하는 경우 공시담당자의 사전 검토를 거쳐야 한다.
- ② 언론사 등 대중매체에서 당사에 취재 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대표이사 및 공시책임자가 응할 수 있다. 단, 필요한 경우 공시책임자가 취재에 응할 자를 지정할 수 있다.

제 15조 (시장풍문) 당사는 시장풍문에 대하여 거래소의 적법한 요청 없이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심의/등록	(주) 퍼시스	사규 번호	퍼일반규-13-000
	공시규정		페이지 6 / 6

제 16조 (정보제공 요구)

- ①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으로부터 회사와 관련한 정보공개를 요구 받은 경우 공시책임자는 당해 요구의 적법성을 검토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② 전 항의 결정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공시책임자는 제공되는 정보가 투자판단 및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법무담당부서 또는 외부 법률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공정공시 대상에 해당하거나 투자판단 및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인 경우에는 당해 정보제공을 요구한 자에 대한 정보 제공과 동시에(또는 정보 제공 전까지) 일반에게 공개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부 칙

제 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문서번호		공시사항 확인서 200년 월 일	심의			승인
수신			I	II	III	
참조						
건명						

◆ 공시할 사항

공시구분	주요 내용	비고
정기공시		
수시공시		
조회공시		

본 자료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상당한 주의의무를 다하여 작성되었으므로 공시자료를 이용하는 자에게 중대한 오류를 유발시킬 만한 중요한 사실의 누락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소 속 :

담당자:

공시문서 점검표

점검목적	점검내용	확인결과	
		적합	부적합
계산검증	숫자에 대한 계산검증을 수행하여 정확성을 확인하였는가?		
문서검사	문서오류검사를 실시하여 작성내역의 오류여부를 확인하였는가?		
지침준수	작성지침에 따라 공시항목별로 요구되는 기재사항을 정확히 모두 작성하였는가?		
표기단위	표기단위는 작성지침에 따라 기재하였는가?		
대사확인	원본데이터와의 대사를 통해 일치여부를 확인하였는가?		
"	재무정보를 표시하는 공시항목의 경우 장부 혹은 감사보고서 등과 대사하여 일치여부를 확인하였는가?		
"	기(既) 공시한 자료와 대사하여 공시자료 간의 일치여부를 확인하였는가?		
"	회계연도간 비교표시되는 공시항목의 경우, 전년도/전반기 보고서 등과 대사하여 공시자료 간의 일치여부를 확인하였는가?		
기준시점	최종 확정되지 않은 데이터로 작성한 경우, 잠정치임을 명시하였는가?		
완전성	"-" (해당사항 없음)로 표시하는 공시항목에 대해 그 완전성을 확인하였는가?		
수정보완	담당부서로부터 취합한 자료에 수정/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존재하는 경우, 수정/보완된 자료를 수취하여 반영하였는가?		
기한준수	관련법령에 따른 공시일정을 준수하여 취합 작성하였는가?		


제출된 공시 문서는 담당부서에서 받은 자료를 기초로 관련 법규 및 규정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거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소속 :

담당 :

서명

입 안	담당	심의	승인	사 규 신 청 서			심 의	담당	심의			승 인
				<input type="checkbox"/> 제정	<input checked="" type="checkbox"/> 개정	<input type="checkbox"/> 폐지			I	II	III	
				<input type="checkbox"/> 제정 <input checked="" type="checkbox"/> 개정 <input type="checkbox"/> 폐지 관련품의								
사 규 번 호		파일반규-12-00			신 청 일 자		2009-08-28					
사 규 명		공시규정			입 안 부 서		기획실					
관 계 규 정					입 안 자		박재완					
합 의 부 서		일자	의견		확인	심의부서의견						
						내 용						
						서 식						
제 (개정) 사 유												
폐 지 사 유												
개 정	현행					변경						
	제1장 제3조 2항 증권거래법 제3장 공시절차					제3조 2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장 공시통제활동과 운영 제5장 임직원의 불공정거래 금지 (신설) 제14조 일반원칙 제15조 미공개 중요정보의 관리 제16조 계열회사의 미공개중요정보 제17조 단기매매차익의 반환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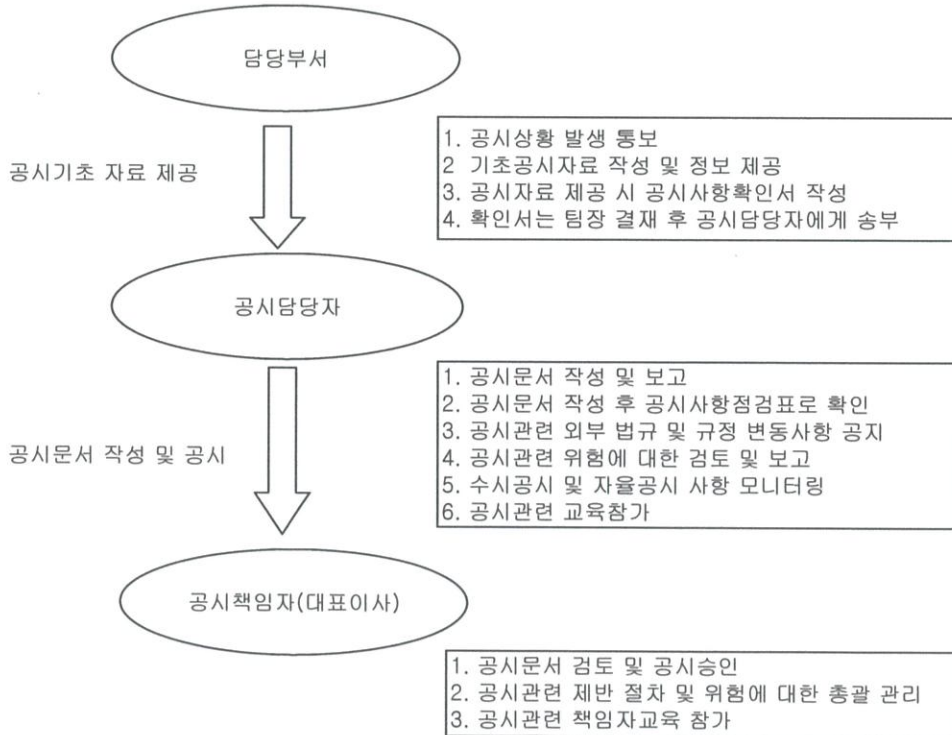
입안	담당	심의	승인	사 규 신 청 서				심의	담당	심의			승인
				<input checked="" type="checkbox"/> 제정	<input type="checkbox"/> 개정	<input type="checkbox"/> 폐지	관련품의			I	II	III	
사 규 번 호							신 청 일 자	2007년 2월 7일					!
사 규 명	공규정						입 안 부 서	기 획 실					
관 계 규 정							입 안 자	엄 두 옥					
합 의 부 서	일자	의견			확인	심의부서의견							
						내 용							
						서 식							
제 정 사 유	●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공사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함.												
폐 지 사 유													
개 정	현행						변경						

● 공시규정 요약 및 공시제도 운영방안

1. 공시규정 요약

구분	세부항목	내용	비고
공시통제 활동 및 운영	공시종류	정기공시, 수시공시, 공정공시, 조회공시	
	운영	* 담당부서 : 공시상황 발생 통보 및 기초공시자료 취합, 전달 * 공시담당자: 공시자료 검토후 공시문서작성 공시관련 법·규정 검토 후 정기적 업데이트 * 공시책임자: 공시문서 검토 후 공시승인 공시 위험관리	
기타사항	언론관계	보도자료 배포, 사후점검 및 언론사의 취재 응대	
	시장풍문	시장풍문 및 정보제공 요구에 대한 대응	

2. 공시제도 세부운영방안



[별표 1] 정기공시(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분기보고서)

1. 사업, 반기, 분기보고서 및 연결재무제표, 결산재무제표 관련 일반사항

신고 및 보고사항	관 계 법 규	신고, 보고처	신 고 기 간	비 고
1. 사업보고서 제출	증권거래법 제186조의2 발행공시규정 제72조 공시규정 제21조	금융감독위원회(공시감독국) 증권선물거래소(공시총괄팀)	사업년도 경과 후 90일 이내	
2. 반기보고서 제출	증권거래법 제186조의3 발행공시규정 제72조 공시규정 제21조	금융감독위원회(공시감독국) 증권선물거래소(공시총괄팀)	사업년도 6월경과 후 45일 이내	
3. 분기보고서 제출	증권거래법 제186조의3 발행공시규정 제72조 공시규정 제21조	금융감독위원회(공시감독국) 증권선물거래소(공시총괄팀)	사업년도 3월, 9월 종료 후 45일 이내	

2. 사업/분기/반기 보고서 상세사항

항목	세부사항		담당부서	비고
서명	대표이사 확인 서명		재경팀	
		회사의 목적	기획실	
		회사의 연혁	기획실	
		자본금변동상황	기획실	
		주식의 총수	기획실	
회사의 개황	의결권현황		기획실	
		배당에 관한 사항	기획실	
		기업의 개요	기획실 영업기획팀 인사팀	
		주요제품 등의 현황	상품기획팀 팀스기획팀	
사업의 내용	주요제품 및 원재료 등	주요제품 등의 가격변동 추이	상품기획팀 팀스기획팀	
		주요 원재료 등의 현황	생산관리팀(안성) 충주공장관리팀 장호원공장관리팀	
		주요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 추이	생산관리팀(안성) 충주공장관리팀 장호원공장관리팀	
		생산능력 및 생산능력의 산출근거	생산실적 및 가동률	
생산 및 설비에 관한 사항		생산실적 및 가동률	생산관리팀(안성) 충주공장관리팀 장호원공장관리팀	
		생산설비의 현황 등	재경팀	

<p>재무에 관한 사항</p>	<p>매출에 관한 사항</p>	<p>매출실적</p>	<p>상품기획팀 팀스기획팀</p>		
		<p>판매경로 및 판매방법변 등</p>	<p>기획실 영업기획팀 팀스기획팀 해외사업팀</p>		
		<p>수주상황</p>	<p>영업기획팀</p>		
		<p>파생상품 등에 관한 사항</p>	<p>기획실</p>		
		<p>경영상의 주요계약 등</p>	<p>기획실</p>		
		<p>연구개발활동</p>	<p>상품기획팀</p>		
		<p>연구개발실적</p>	<p>개발팀</p>		
		<p>기타 투자 의사결정에 필요한 사항</p>	<p>기획실</p>		
		<p>요약재무정보</p>	<p>재경팀</p>		
		<p>재무제표 이용상의 유의점</p>	<p>재경팀</p>		
		<p>회계정보에 관한 사항</p>	<p>재경팀</p>		
		<p>재무제표</p>	<p>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현금흐름표 당해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당해 사업연도의 수정 전·후의 재무제표 요약연결재무정보</p>	<p>재경팀 재경팀 재경팀 재경팀 재경팀 재경팀 재경팀</p>	
		<p>연결재무제표</p>	<p>연결재무제표 이용상의 유의점</p>	<p>재경팀</p>	
<p>연결재무제표</p>	<p>연결재무제표</p>	<p>재경팀</p>			
<p>부분별 재무 현황</p>		<p>재경팀</p>			
<p>합계 변경 설명</p>		<p>재경팀</p>			

사내의 업무

감사인의 감사의견	감사인(공인회계사)의 감사의견 등		재경팀		
	최근 3사업연도의 외부감사인에게 지급한 보수 등에 관한 사항		재경팀		
지배구조 및 관계회사 등의 현황	기타		재경팀		
	지배구조의 개요	이사회제도에 관한 사항		기획실	
		감사제도에 관한 사항		기획실	
		주주의 의결권행사에 관한 사항		기획실	
		임원의 보수 등		인사팀	
		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 현황		인사팀	
		관계회사등의 현황		기획실	
		타법인출자 현황		기획실	
		주식의 분포		기획실	
		주식사무		기획실	
최근 6개월 간의 주가 및 주식 거래실적			기획실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	임원의 현황		인사팀		
	직원의 현황		인사팀		
	노동조합의 현황		인사팀		
	회계 및 공시 전문인력 보유현황		인사팀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용			기획실		
부속명세서			재경팀		
기타 필요할 경우			기획실		

[별표 2] 수시공시

1. 주주총회 관련사항

신고 및 보고 사항	관계법규	신고, 보고처	신고기간	비고	담당부서
1. 주주명부의 폐쇄일 또는 기준일에 관한 결의 또는 결정이 있을 때	상장규정 제55조3	증권선물거래소 (공시총괄팀)	지체없이		기획실
2. 주주총회의 소집 및 의안(사외이사의 선임에 관한 의안이 있는 경우에는 그 후보자의 성명 및 경력 포함)에 관한 결의 또는 결정이 있을 때	상장규정 제55조1 발행공시규정 제69조①20	증권선물거래소 (공시총괄팀) 금융감독위원회 (공시감독국)	지체없이		기획실
3. 주주총회소집을 위한 이사회결의 또는 주주총회결의가 있을 때, 이 경우 사업목적 변경, 사외이사의 선임, 해임,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선임, 해임, 전종투표제의 도입, 폐지 등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구분하여 명기함.	공시규정 제7조①47	증권선물거래소 (공시총괄팀)	사유발생 당일까지		기획실
4. 사업목적의 변경에 관한 결정이 있을 때	증권거래법 제186조 발행공시규정 제69조①2파	금융감독위원회 (공시감독국)	사유발생 당일까지		기획실
5. 주주총회결과(주주총회의의안 및 의사록, 영업보고서등) 제출	상장규정 제55조4	증권선물거래소 (공시총괄팀)	지체없이		기획실
6. 정기총회의 승인을 얻은 재무제표 제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와 동일한 경우 제출면제) ※ 지배주주 및 그와 특수한 관계가 있는 주주의 주식소유현황과 주식 및 출자지분변동상황영세서	외감법 제8조 외감법시행령 제7조	증권선물위원회 (회계감독국)	정기총회 종료일로부터 2주 이내		기획실
7. 주식배당에 관한 결정이 있을 때	발행공시규정 제54조② 공시규정 제7조①12	금융감독원 (공시감독국) 증권선물거래소 (공시총괄팀)	사유발생 당일까지	사업년도말 15일 전까지	기획실
8. 현금배당(본기, 중간배당 포함)에 관한 결정이 있을 때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3조 발행공시규정 제69조①7	금융감독위원회 (공시감독국)	사유발생 당일까지		기획실
9. 현금배당(본기, 중간배당 포함)에 관한 결정이 있을 때 및 중간(본기 포함)배당을 위한 주주명부폐쇄기간(기준일을 포함한다)을 결정할 때	공시규정 제7조①44	증권선물거래소 (공시총괄팀)	사유발생 당일까지	시가배당률 기준	기획실

<p>10. 감사인으로부터 감사보고서를 제출받은 때 (감사보고서상 아래의 사실이 확인되면 함께 신고)</p> <p>(1) 감사의견 부적정, 의견거절 또는 감사범위의 제한으로 인한 한정 (2) 최근사업연도의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 장식(전액장식인 경우 별도 표시) (3) 최근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50억원 미만</p>	<p>공시규정 제7조①14</p>	<p>증권선물거래소 (공시총괄팀)</p>	<p>사유발생 당일까지</p>		<p>기획실</p>
<p>11. 의견권대리행사 권유시 참고서류 및 위임장용지 서본 제출</p>	<p>증권거래법시행령 제85조 발행공시규정 제139조①</p>	<p>금융감독위원회 (공시감독국)</p>	<p>비치하는 날의 2일 전까지</p>		<p>기획실</p>
<p>12. 사외이사 및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한다)가 임기 만료 외의 사유로 퇴임한 때</p>	<p>발행공시규정 제69조①10</p>	<p>금융감독위원회 (공시감독국)</p>	<p>사유발생 익일까지</p>		<p>기획실</p>
<p>13. 사외이사 및 감사가 임기 만료외의 사유로 퇴임한 때</p>	<p>공시규정 제7조②8</p>	<p>증권선물거래소 (공시총괄팀)</p>	<p>사유발생 익일까지</p>		<p>기획실</p>
<p>14. 감사의 선임, 해임 또는 임기만료외의 사유로 퇴임한 경우</p>	<p>증거법시행령 제84조의19</p>	<p>금융감독위원회 (공시감독국) 증권선물거래소 (공시총괄팀)</p>	<p>사유발생 익일까지</p>		<p>기획실</p>
<p>15. 주주총회 소집통지, 공고사항을 소집통지, 공고에 대신하여 다 음의 사항을 정보통신망에 게재하고 비치</p> <p>(1) 비상임이사의 활동내역과 보수 (2)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 (3) 경영참고사항</p>	<p>증권거래법 제191조의10 증거법시행령 제84조의17 증거법시행규칙 제36조의16</p>		<p>주총소집, 통지, 공고와 동시에</p>	<p>비치장소 : 본점, 지점, 영의계서 대행회사, 금융감독위 원회, 증권선물거래 소</p>	<p>기획실</p>
<p>16. 상법 제329조의2 및 제440조의 규정에 의한 주식분할 또는 주 식변환(자본감소를 위한 주식변환은 제외)에 관한 결정이 있을 때</p>	<p>공시규정 제7조①28</p>	<p>증권선물거래소 (공시총괄팀)</p>	<p>사유발생 당일까지</p>		<p>기획실</p>
<p>17.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 발생하였거나 법령 또는 정관에서 정한 주총결의사항 등 투자자의 투자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결 의나 주총결의 등의 결정이 있을 때</p>	<p>증권거래법 제186조 발행공시규정 제69조①20</p>	<p>금융감독위원회 (공시감독국)</p>	<p>지체없이</p>		<p>기획실</p>

2. 증자, 감자 및 이익소각 관련 사항

신고 및 보고 사항	관계법규	신고, 보고처	신고기간	비고	담당부서
1. 증자 또는 감자에 관한 결정이 있을 때	발행공시규정 제69조①1가 공시규정 제7조①7	금융감독위원회 (공시감독국) 증권선물거래소 (공시총괄팀)	사유발생 당일까지		기획실
2. 이익소각에 관한 결정이 있을 때	발행공시규정 제69조①10마 공시규정 제7조①8	금융감독위원회 (공시감독국) 증권선물거래소 (공시총괄팀)	사유발생 당일까지		기획실
3. 유가증권신고서 제출	증권거래법 제8조	금융감독위원회 (공시감독국)			기획실
4. 예비사업설명서 제출	증권거래법 제13조, 증거법시행령 제7조의2	금융감독위원회 (공시감독국)	유가증권신고서 제출과 동시		기획실
5. 본담금 납부(주권 유가증권예탁증서 발행)	증권거래법 제206조의8 증거법시행령 제90조의6 본담금징수등 규정 제7조	금융감독원 (총무국)	유가증권신고서 제출과 동시	발행가액총액의 1만분의1.8	기획실
6. 정정신고서 제출 -유가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중 변경이 있을 때 -중요한 내용의 정정을 결정한 때	증권거래법 제11조 발행공시규정 제22조	금융감독위원회 (공시감독국)	첨삭일 개시전		기획실
7. 주식을 모집 또는 매출하는 경우 모집 또는 매출가액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그 산정방법을 기재하여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그 모집 또는 매출가액이나 인수인등이 구체적으로 확정된 때	발행공시규정 제19조, 제25조	금융감독위원회 (공시감독국)	지체없이	1차 발행가 및 확정 발행가액, 사업설명 서에 확정 발행가액 등 보완	기획실
8. 일반공모방식에 의하여 신주발행시 그 발행가액이 확정되는 때 에 그 내용을 공시	발행공시규정 제59조	금융감독위원회 (공시감독국)	지체없이		기획실
9. 철회신고서 제출	증권거래법 제9조 발행공시규정 제33조	금융감독위원회 (공시감독국)	신고서의 효력발생전		기획실
10. 본사업설명서 제출(보완)	증거법시행령 제12조 발행공시규정 제25조 공시규정 제24조	금융감독위원회 (공시감독국) 증권선물거래소 (공시총괄팀)	지체없이 (신고서의 효력발생일)		기획실

11. 유가증권발행실적보고서 제출	증권거래법 제17조	금융감독위원회 (공시감독국)	유가증권발행 종료 후 지체없이 중 (초과배정음선 계약을 인수회사가 체결한 경 우에는 동 음선의 행 사로 인한 주식발행이 완료되었거나 동 음선 의 권리행사에 기한 도래로 주식이 새로이 발행되지 아니하는 것 으로 확정된 때)		기확실
12. 신주권의 상장신청	상장규정 제46조 상장규정제칙 제7조	증권선물거래소 (상장제도총괄팀)	신주발행 후		기확실
13. 신주인수권증권, 신주인수권부채권 또는 전환사채권을 발행하거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상장법인인 신주인수권, 전환청구권 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발행예정종주식수에 대하여 일괄하여 상장 신청	상장규정 제48조	증권선물거래소 (상장제도총괄팀)	권리행사가능일 직전일까지	신주일괄상장신청서	기확실
14.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신청	상장규정 제24조	증권선물거래소 (상장제도총괄팀)	신주인수권증서 발행후		기확실
15. 상장수수료 및 연부과금 납부	상장규정 제96조	증권선물거래소 (상장제도총괄팀)	상장신청과 동시		기확실
16. 주식에탁증서 발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 (1) 에탁기관과 주식에탁증서 발행에 따른 에탁계약을 체결하였을 때 (2) 주식에탁증서를 상장하거나 상장되어 있는 증권선물거래소로부터 상장폐지, 매매거제정지 등의 조치가 있을 때 (3) 매월산기말 주식에탁증서의 소유자 명부가 작성되었을 때 (4) 주식에탁증서에 관한 권리, 이익 또는 취급에 관한 중요한 사실이 발생한 때	상장규정 제57조 상장규정제칙 제32조	증권선물거래소 (상장제도총괄팀)	지체없이		기확실

3. 사채 발행 관련사항

신고 및 보고 사항	관계법규	신고, 보고처	신고기간	비고	담당부서
1. 사채의 발행에 관한 결의 또는 결정이 있을 때	상정규정 제55조2	증권선물거래소 (상장제도총괄팀)	지체없이		기획실
2.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교환사채 또는 주식에탁증서(외국에서 이와 유사한 증권 또는 증서가 발행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발행에 관한 결정이 있을 때	발행공시규정 제69조①1나 공시규정 제7조③32	금융감독위원회 (공시감독국) 증권선물거래소 (공시총괄팀)	사우발생 당일까지	신주인수권행사보고서, 전환청구권행사보고서, 교환청구권행사보고서	기획실
3. 신주인수권증권, 신주인수권부사채권, 전환사채권 또는 교환사채권을 상장한 법인은 신주인수권의 행사, 전환청구권의 행사 또는 교환청구권의 행사가 있을 때(주권상장법인이 신주발행통지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예외)	상정규정 제68조①	증권선물거래소 (상장제도총괄팀)	지체없이		기획실
4. 신주인수권행사기액, 전환기액 또는 교환기액 등의 변경(확정)이 있을 경우에는 이사회 의사록 사본 제출	상정규정 제68조②	증권선물거래소 (상장제도총괄팀)	지체없이		기획실
5. 일괄신고서 제출(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이익참가부사채, 교환사채 제외)	증권거래법 제8조 증거법시행규칙 제2조의3	금융감독위원회 (공시감독국)	유기증권 모집, 매출시 유기증권신고서 제출과 동시		기획실
6. 일괄신고추가서류 제출(일괄신고서 제출한 발행인)	증권거래법 제10조 증거법시행령 제5조의8	금융감독위원회 (공시감독국)	유기증권신고서 제출과 동시		기획실
7. 예비사업설명서 제출	증거법시행령 제7조의2	금융감독위원회 (공시감독국)	유기증권신고서 제출과 동시		기획실
8. 유기증권신고서 제출(일괄신고한 경우 제외)	증권거래법 제8조	금융감독위원회 (공시감독국)	유기증권신고서 제출과 동시		기획실
9. 분담금 납부	증권거래법 제206조의8 증거법시행령 제90조의6 분담금징수등규정 제7조	금융감독위원회 (총무국)	유기증권신고서 제출과 동시		기획실
10. 정정신고서 제출	증권거래법 제11조 발행공시규정 제22조	금융감독위원회 (공시감독국)	정약일 개시전		기획실
11. 사채발행시 발행기액과 발행이자율에 대하여 그 산정 또는 결정방법만을 기재한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청약전일까지 확정된 발행기액과 발행이자율에 관한 자료 제출	발행공시규정 제19조	금융감독위원회 (공시감독국)	지체없이		기획실
12. 철회신고서 제출	증권거래법 제9조 발행공시규정 제33조	금융감독위원회 (공시감독국)	신고서의 효력발생전		기획실
13. 본사업설명서 제출(보완)	증거법시행령 제6조 발행공시규정 제25조 공시규정 제24조	금융감독위원회 (공시감독국) 증권선물거래소 (공시총괄팀)	지체없이 (신고서의 효력발생일)		기획실

14. 유가증권발행실적보고서 제출	증권거래법 제17조 발행공시규정 제29조	금융감독위원회 (공시감독국)	사채발행 종료후		기확실
15. 신주인수권증권의 상장신청	상장규정 제23조	증권선물거래소 (상장제도총괄팀)	신주인수권 증권 발행후		기확실
16. 채권의 상장신청	상장규정 제26조, 제29조	증권선물거래소 (상장제도총괄팀)	채권발행 후		기확실
17. 상장수수료 및 연부과금 납부	상장규정제96조	증권선물거래소 (상장제도총괄팀)	상장신청과 동시		기확실
18. 상장채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문서로 통보 (1) 기한의 이익상실에 관한 통지가 있을 때 (2) 사채권자집회 소집통지가 있을 때 (3) 사채권자집회 결의통지가 있을 때 (4) 기발행채권의 중도상환의 결정이 있을 때	상장규정 제69조, 상장규정세칙 제38조	증권선물거래소 (상장제도총괄팀)	지체없이		기확실
19. 기타 사채에 관한 권리. 이익 또는 취급등 중요한 사항에 대한 결의 또는 결정이 있을 때	상장규정 제55조7	증권선물거래소 (상장제도총괄팀)	지체없이		기확실

4. 채권, 채무 관련사항

신고 및 보고 사항	관계법규	신고, 보고처	신고기간	비고	담당부서
1. 자기자본의 100분의 10(대규모법인의 경우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단기차입금의 증가에 관한 결정이 있을 때	발행공시규정 제69조①1사 공시규정 제7조①38	금융감독위원회 (공시감독국) 증권선물거래소 (공시총괄팀)	사유발생 당일까지	단기차입금에는 모건의 외의 방법으로 발행 되는 만기 1년 미만 의 사채금액을 포함 하며 기존의 단기차 입금 상환을 위한 차 입금은 제외	기획실
2. 단기차입금 감소	공시규정 제7조의2	증권선물거래소 (공시총괄팀)	사유발생 익일까지	자율공시	재경팀
3. 자기자본의 100분의 5(대규모법인의 경우 100분의 2.5) 이상의 담보제공(타인을 위하여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채무보증(입찰, 계약, 하자, 채액보증 등의 이행보증 및 납세보증을 위한 채무보증을 제외한다)에 관한 결정이 있을 때	발행공시규정 제69조①4가 공시규정 제7조①35가	금융감독위원회 (공시감독국) 증권선물거래소 (공시총괄팀)	사유발생 당일까지	신고시 그 결정일 또는 사유발생일 현재 의 채무자별 담보제공 액 또는 채무보증잔 액을 함께 신고하여 아하며 건설업을 영 위하는 법인이 공사 시행을 위하여 발주 처 또는 임주예정자 등에게 제공하는 담 보 또는 채무보증을 제외	기획실
4. 금전 또는 유가증권대여	공시규정 시행세칙 제7조의3	증권선물거래소 (공시총괄팀)	사유발생 익일까지	자율공시	재경팀
5. 자기자본의 100분의 5(대규모법인의 경우 100분의 2.5)이상의 채무를 인수하거나 면제하여 주기로 결정할 때	공시규정 제7조①35나	증권선물거래소 (공시총괄팀)	사유발생 당일까지	자율공시	기획실
6. 채무면제이익 발생	공시규정 시행세칙 제7조의3	증권선물거래소 (공시총괄팀)	사유발생 익일까지	자율공시	재경팀
7. 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로 되거나 은행과의 거래가 정지 또는 금지된 때	증권거래법 제186조 발행공시규정 제69조①2나 공시규정 제7조①1	금융감독위원회 (공시감독국) 증권선물거래소 (공시총괄팀)	사유발생 당일까지		재경팀
8. 거래은행(채권금융기관을 포함한다)이 법인의 경영관리(공동관리를 포함한다)를 개시한 사실을 확인한 때	증권거래법 제186조 발행공시규정 제69조①2라	금융감독위원회 (공시감독국)	사유발생 당일까지		재경팀
9. 거래은행 또는 채권금융기관이 법인의 경영관리 또는 공동경영관리를 개시, 중단 또는 해제하기로 결정한 사실이 확인된 때	공시규정 제7조①10	증권선물거래소 (공시총괄팀)	사유발생 당일까지		재경팀
10. 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을 한 때 및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의 개시의 결정사실을 통보받은 때	증권거래법 제186조 발행공시규정 제69조①2다	금융감독위원회 (공시감독국)	사유발생 당일까지		재경팀

11.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에 의한 회생절차(화의법에 의한 회생의 포함)의 개시 신청을 한 때 및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의 개시, 종결 또는 폐지 등의 결정사실을 통보받은 때	공시규정 제7조①3	증권선물거래소 (공시총괄팀)	사유발생 일까지	당	재경팀
12. 상법 제517조 및 기타 법률에 의한 해산사유가 발생한 때, 다만, 상법 제227조제4호 및 제517조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한 해산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증권거래법 제186조 발행공시규정 제69조①2가 공시규정 제7조①6	금융감독위원회 (공시감독국) 증권선물거래소 (공시총괄팀)	사유발생 당일까지		기획실
13. 주채권은행 또는 채권금융기관협의회로부터 회생절차, 해산, 청산, 파산의 신청을 요구받은 때	발행공시규정 제69조①2바 공시규정 제7조①19	금융감독위원회 (공시감독국) 증권선물거래소 (공시총괄팀)	사유발생 당일까지		재경팀
14. 회생절차 종결, 폐지신청	공시규정 시행세칙 제7조의3	증권선물거래소 (공시총괄팀)	사유발생 일까지	자율공시	기획실
15. 채권금융기관협의회와 경영정상화 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때	발행공시규정 제69조①2사 공시규정 제7조②11	금융감독위원회 (공시감독국) 증권선물거래소 (공시총괄팀)	사유발생 일까지		기획실
16. 자기자본의 100분의 5(대규모법인의 경우 100분의 2.5) 이상을 출자(최근 사업연도말 대차대조표상의 가액을 기준으로 한다)하고 있는 주권비상장법인인 상장법인인공시규정 제1항제1호(아음수표의 부도, 은행거래정지, 금지), 제3호(회생절차(화의포함)개시신청을 한 때,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개시, 종결 또는 폐지 등의 결정사실을 통보받은 때), 제6호(해산)에 해당된 사실이 확인된 때	공시규정 제7조②4	증권선물거래소 (공시총괄팀)	사유발생 일까지		기획실

5. 타법인출자, 출자지분의 처분 및 투자관련사항

신고 및 보고 사항	관계법규	신고,보고처	신고기간	비고	담당부서
1. 자기자본의 100분의 5(대규모법인의 경우 1,000분의 25)이상의 출자(타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증권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출자지분 처분에 관한 결정 [신탁업법상의 특정금지신탁 또는 간접투자자산운용법상의 간접투자기구(사모투자기구)를 포함한다]에 의한 출자 및 처분을 포함한다] 이 있을 때	발행공시규정 제69조①5사	금융감독위원회 (공시감독국)	사유발생 당일까지	공개매수에 의한 출자 및 금융기관의 단 처분(당보권 등 권리 실행에 의한 출자, 출자지분처분을 포함한다)의 경우는 제외	기획실
	공시규정 제7조①25	증권선물거래소 (공시총괄팀)			
2. 자기자본의 100분의 10(대규모법인의 경우 100분의 5) 이상 또는 1,000억원 이상의 신규시설투자, 시설증설 또는 별도공정의 신설에 관한 결정이 있을 때	증권거래법 제186조 발행공시규정 제69조①5가	금융감독위원회 (공시감독국) 증권선물거래소 (공시총괄팀)	사유발생 당일까지		기획실
	공시규정 제7조①24				
3. 기술도입.이전	공시규정 제7조①3	증권선물거래소 (공시총괄팀)	사유발생 익일까지	자율공시	기획실
4. 최근 사업년도말 자산총액의 100분의 10(대규모법인의 경우 100분의 5)이상의 유행자산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결정[신탁업법상의 특정금지신탁 또는 간접투자자산운용법상의 간접투자기구(사모투자기구)를 포함한다]에 의한 취득 및 처분을 포함한다]이 있을 때	공시규정 제7조①27	증권선물거래소 (공시총괄팀)	사유발생 당일까지		기획실
	5. 자원개발 투자, 개발자원 경제성 판명	공시규정 제7조①2	증권선물거래소 (공시총괄팀)	사유발생 익일까지	자율공시
6. 상호지속은행법에 의한 상호지속은행의 과점주주가 되거나 그 지위가 변경된 때	공시규정 제7조①2	증권선물거래소 (공시총괄팀)	사유발생 익일까지	자율공시	기획실
	7. 당해 법인이 과점주주로 있는 상호지속은행의 국제결제은행이 정한 자기지분비율이 낮아진 때	공시규정 제7조①2	증권선물거래소 (공시총괄팀)	사유발생 익일까지	자율공시
8. 당해 법인이 과점주주로 있는 상호지속은행의 매분기별 재무제표	공시규정 제7조①2	증권선물거래소 (공시총괄팀)	사유발생 익일까지	자율공시	기획실
9. 법인의 경영, 재산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신물질 또는 신기술에 관한 특허권을 취득한 때	증권거래법 제186조 발행공시규정 제69조①5다	금융감독위원회 (공시감독국) 증권선물거래소 (공시총괄팀)	사유발생 익일까지		상품기획팀
	공시규정 제7조②1				
10. 특허권 양도, 양수	공시규정 제7조①2	증권선물거래소 (공시총괄팀)	사유발생 익일까지	자율공시	상품기획팀

6. 손해발생·손해배상청구 및 손익구조 관련사항

신고 및 보고 사항	관계법규	신고, 보고처	신고기간	비고	담당부서
1. 원재, 지면, 전시, 사변, 화재 등으로 인하여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의 100분의 5(대규모법인의 경우 1,000분의 25)이상의 재해(최근사업연도말 재무제표상의 가액을 기준으로 한다)가 발생한 때	증권거래법 제186조 발행공시규정 제69조①3다 공시규정 제7조①4	금융감독위원회 (공시감독국) 증권선물거래소 (공시총괄팀)	사유발생 당일까지		기획실
2. 최근 사업년도 생산액의 100분의 10(대규모법인의 경우 100분의 5)이상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생산활동이 중단되거나 폐업된 때 및 당해 중단 및 폐업 사유가 해소되어 생산활동이 정상적으로 재개된 때	증권거래법 제186조 발행공시규정 제69조①3가 공시규정 제7조①9	금융감독위원회 (공시감독국) 증권선물거래소 (공시총괄팀)	사유발생 당일까지		기획실
3. 청구금액이 자기자본의 100분의 5(대규모법인의 경우 100분의 2.5)이상의 소송이 제기, 신청되거나 그 소송이 판결, 결정된 사실을 확인한 때	공시규정 제7조①23가	증권선물거래소 (공시총괄팀)	사유발생 당일까지		기획실
4.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의 100분의 10(대규모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5)이상 또는 1,000억원 이상에 해당하는 제품에 대한 수거, 파기 등을 실시하기로 결정한 때	증권거래법 제186조 발행공시규정 제69조①3라 공시규정 제7조①30	금융감독위원회 (공시감독국) 증권선물거래소 (공시총괄팀)	사유발생 당일까지		기획실
5. 자기자본의 100분의 5(대규모법인의 경우 100분의 2.5) 이상의 벌금, 과태료, 과징금 또는 추징금 등이 부과된 사실을 확인한 때	공시규정 제7조①31	증권선물거래소 (공시총괄팀)	사유발생 당일까지		기획실
6.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의 100분의 10(대규모법인의 경우 100분의 5)이상을 차지하는 거래처와의 거래가 중단된 때	공시규정 제7조①29	증권선물거래소 (공시총괄팀)	사유발생 당일까지		영업기획팀
7.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의 100분의 10(대규모법인의 경우 100분의 5)이상의 단일판매계약 또는 공급계약을 체결하거나 그 계약을 해지한 때	공시규정 제7조②3	증권선물거래소 (공시총괄팀)	사유발생 익일까지		영업기획팀
8. 재산증여, 수증	공시규정 제7조②2	증권선물거래소 (공시총괄팀)	사유발생 익일까지		기획실
9.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의 100분의 10(대규모법인의 경우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영업 또는 주된 영업의 일부 또는 전부가 정지되거나 그 정지에 관한 행정처분이 있을 때(그 영업의 인가, 허가 또는 면허의 취소, 반납과 그에 상응하는 생산품에 대한 판매 활동의 정지를 포함)	증권거래법 제186조 발행공시규정 제69조①3나 공시규정 제7조①2	금융감독위원회 (공시감독국) 증권선물거래소 (공시총괄팀)	사유발생 당일까지		기획실
10. 최근사업연도 매출액, 영업손익 또는 당기순손익이 직전사업연도 대비 100분의 30(대규모법인의 경우 100분의 15)이상 증가 또는 감소한 사실이나 결정이 있을 때	공시규정 제7조①38	증권선물거래소 (공시총괄팀)	사유발생 당일로 하되 결산주총 소집통지, 공고하는 날 이전까지	매출액, 영업손익, 당기순손익 항목중 한 항목 이상에 해당되어 신고하는 경우 여타 항목 및 자산·부채·자본 총계 현황을 함께 신고)	기획실

11. 자기자본의 100분의 5(대규모법인의 경우 100분의 2.5) 이상의 금액에 상당하는 임·직원 등의 횡령·배임행위가 확인된 때 및 그 행위가 사실상 확인된 때	공시규정 제7조①46	증권선물거래소 (공시총괄팀)	사유발생 당일까지		기획실
12. 자기자본의 100분의 10(대규모법인의 경우 100분의 5) 또는 1,000억원 이상의 특별손실 또는 특별이익이 발생한 때	증권거래법 제186조 발행공시규정 제69조①60A 공시규정 제7조②7	금융감독위원회 (공시감독국) 증권선물거래소 (공시총괄팀)	사유발생 익일까지		재경팀
13. 파생상품의 거래(위험회피 목적의 거래를 제외한다)로 인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5(대규모법인의 경우 100분의 2.5) 이상의 손실(미실현손을 포함한다)이 발생한 때	공시규정 제7조②6	증권선물거래소 (공시총괄팀)	사유발생 익일까지		기획실
14. 상장법의 공시규정 제1항제35호 가목의 규정(자기자본의 100분의 3(대규모법인의 경우 1,000분의 15)이상의 담보제공 또는 채무보증)에 의한 채무자가 제1항제1호(해산등), 제3호(회생정리절차 개시등) 또는 제6호(발행어음·수표의 부도, 은행거래정지, 채개등)에 해당된 사실이 확인된 때	공시규정 제7조②5	증권선물거래소 (공시총괄팀)	사유발생 익일까지		재경팀

7. 주식 변동보고 관련사항

신고 및 보고 사항	관계법규	신고, 보고처	신고기간	비고	담당부서
1. 임원 또는 주요주주(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가 된 날로부터 주식소유상황보고	증권거래법 제188조⑥ 임원, 주요주주 소유상황보고규정 제3조	증권선물위원회 (공시감독국) 증권선물거래소 (주가감시부)	임원 또는 주요주주가 된 날로부터 10일 이내		기획실
2. 임원 또는 주요주주의 소유주식수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그 소유주식변동내용보고	증권거래법 제188조⑥ 임원, 주요주주 소유상황보고규정 제3조	증권선물위원회 (공시감독국) 증권선물거래소 (주가감시부)	익월 10일까지		기획실
3. 주식등의 대량보유 보고(본인과 특별관계자 주식등의 수의 합계가 당해 주식등의 총수의 100분의 5이상 보유하게 된 때)	증권거래법 제200조의2① 발행공시규정 제136조	금융감독위원회 (공시감독국) 증권선물거래소 (주가감시부)	보유하게 된 날로부터 5일 이내		기획실
4. 5%이상 보유환자(특별관계자포함)가 100분의 1이상 변동되거나 보유목적이 변경된 때 그 변동내용 보고	증권거래법 제200조의2④ 발행공시규정 제136조	금융감독위원회 (공시감독국) 증권선물거래소 (주가감시부)	변동일로부터 5일 이내		기획실
5. 5%이상 대량보유 연명보고시 대표자는 특별관계자의 위임장사본 제출	발행공시규정 제132조	금융감독위원회 (공시감독국)	최초 연명보고시		기획실
6. 증권거래법 제200조의2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대량보유 또는 그 변동내용을 보고하여야 하는날 전일까지 세로이 보고하여야 하는 변동내용 보고	증권거래법 제200조의2③	금융감독위원회 (공시감독국) 증권선물거래소 (주가감시부)	당초 대량보유상황 또는 변동내용 보고시 함께 보고		기획실
7. 대량보유보고 및 대량변동보고 내용중 중요기재사항의 정정 또는 변경이 있을 때	증권거래법 제200조의4 발행공시규정 제136조	금융감독위원회 (공시감독국) 증권선물거래소 (주가감시부)	지체없이		기획실
8. 경영관여 목적이 없는 기관투자자등이 대량보유보고 및 대량변동보고	증권거래법 제200조의2① 증거법시행령 제86조의7 발행공시규정 제136조	금융감독위원회 (공시감독국) 증권선물거래소 (주가감시부)	주식등의 보유 또는 변동이 있었던 달의 익월 10일까지		기획실
9. 증권거래법 제200조 제1항의 기준을 초과하여 공공적 범인이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고자 하는 때	증권거래법 제200조 발행공시규정 제141조	금융감독위원회 (공시감독국)	취득전		기획실
10.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증권거래법 제200조 제1항의 기준을 초과하여 공공적범인 발행주식을 취득한 경우 대량주식취득보고	발행공시규정 제143조	금융감독위원회 (공시감독국)	취득기간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		기획실
11. 최대주주등의 소유주식 변동상황 제출	상장규정 제60조	증권선물거래소 (상장제도총괄팀)	지체없이		기획실

<p>12. 증권거래법시행령 제83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단기매매차익의 반환청구요구를 받고 그 날부터 2월이내에 반환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 이를 보고</p>	<p>증권법시행령 제83조의5</p>	<p>증권선물위원회 (공시감독국)</p>			<p>기확실</p>
<p>13. 상장법인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소유주식현황 제출(선임위원회의 제청에 의하여 정기총회의 승인을 얻어 감사인을 선임한 경우는 제외)</p> <p>(1) 당해 회사의 지배주주등의 소유주식현황과 직전 사업년도 개시일 이후 당해자로 제출일까지의 대표이사 변동상황</p> <p>(2) 지배주주등의 소유주식합계가 당해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5이상인 경우 직전 사업년도 개시일 이후의 대표이사 변동현황이 기재된 법인등기부 등본</p> <p>(3)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5조 제3항 제28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 및 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서 사본</p>	<p>외부감사 회계규정 제 18조</p>	<p>증권선물위원회 (공시감독국)</p>	<p>정기총회 종료일로부터 2주이내</p>		<p>기확실</p>

8. 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 관련사항

신고 및 보고 사항	관계법규	신고.보고처	신고기간	비고	담당부서
1. 증권거래법 제18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기주식의 취득 또는 처분(신탁계약등의 체결 또는 해지를 포함), 신탁계약 등의 체결을 통해 취득한 자기주식의 유가증권시장외에서의 처분에 관한 결정이 있을 때	증권거래법 제186조 발행공시규정 제69조①16	금융감독위원회 (공시감독국) 증권선물거래소 (공시총괄팀)	사유발생 당일까지	수시공시사항	기획실
2.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3제1항에 의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할 것을 이사회에서 결의한 때	증권거래법 제189조의2 발행공시규정 제102조	금융감독위원회 (공시감독국) 증권선물거래소 (공시총괄팀)	지체없이	자기주식취득신고서	기획실
3. 자기주식을 처분(증권거래법 부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해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 및 자기주식을 교환대상으로 하는 교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포함)할 것을 이사회에서 결의한 때	발행공시규정 제109조	금융감독위원회 (공시감독국) 증권선물거래소 (공시총괄팀)	지체없이	자기주식처분신고서	기획실
3-1.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경우	발행공시규정 제109조	금융감독위원회 (공시감독국) 증권선물거래소 (공시총괄팀)	최초행사에 대하여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날의 5일전까지	자기주식처분신고서	기획실
4. 증권거래법시행령 제84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계약등의 체결 또는 해지할 것을 이사회 결의가 있을 때	증권거래법 제186조 발행공시규정 제113조	금융감독위원회 (공시감독국) 증권선물거래소 (공시총괄팀)	사유발생 당일까지	신탁계약등 체결신고서, 신탁계약등해지신고서	기획실
4-1. 신탁계약기간의 종료에 따른 신탁해지가 있는 때	발행공시규정 제113조	금융감독위원회 (공시감독국) 증권선물거래소 (공시총괄팀)	신탁계약기간 종료일 이전까지	신탁계약등해지신고서	기획실
5. 자기주식의 취득을 완료하거나 취득하고자 하는 기간이 만료된 때	발행공시규정 제104조	금융감독위원회 (공시감독국) 증권선물거래소 (공시총괄팀)	5일 이내	자기주식취득결과보고서	기획실
6. 자기주식의 처분을 완료하거나 처분하고자 하는 기간이 만료된 때	발행공시규정 제111조	증권선물거래소 (공시총괄팀)	(자기주식교부할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에는 행사기간이 종료된 날 또는 최종행사에 대하여 자기주식을 교부한 날 중 먼저 도래한날로부터 5일 이내)	자기주식처분결과보고서	기획실

7. 신탁계약등체결신고서 제출 후 3월이 경과한 경우 신탁계약등에 의하여 신탁회사 위탁회사 또는 증권투자회사가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상황보고	발행공시규정 제115조	금융감독위원회 (공시감독국) 증권선물거래소 (공시총괄팀)	신탁계약등체결신고서 제출후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5일이내	신탁계약등에 의한 취득상황 보고서	기획실
8. 신탁계약등해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신탁계약등의 해지결과보고	발행공시규정 제115조	금융감독위원회 (공시감독국) 증권선물거래소 (공시총괄팀)	신탁계약등을해지한 날부터 5일이내	신탁계약등해지결과 보고서	기획실
9. 자기주식 취득 또는 처분(직접, 신탁 포함)시 위탁증권회사로 하여금 1일 매수 또는 매도 주문수량등을 신고하도록 함	발행공시규정 106조, 111조 간접투자자산운용업감독규정 제70조	증권선물거래소 (주식시장부)	매수 또는 매도주문일 전일 장 종료후 즉시		기획실
10. 신탁의 경우 자기주식 취득금액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사실을 통보	발행공시규정 116조	신탁회사, 자산운용회사 또는 투자회사	지체없이		기획실

9. 주식매수선택권 관련사항

신고 및 보고 사항	관계법규	신고, 보고처	신고기간	비고	담당부서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거나 부여를 취소하기로 결정한 때	발행공시규정 제69조①11 공시규정 제7조①42	금융감독위원회 (공시감독국) 증권선물거래소 (공시총괄팀)	사유발생 당일까지		기획실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 위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한 때	증권거래법 제189조의4 증거법시행령 제84조의6 공시규정 제23조	금융감독위원회 (공시감독국) 증권선물거래소 (공시총괄팀)	지체없이	주총의사록 첨부	기획실
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자기주식을 교부하기 위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하기로 이사회에서 결의한 때	발행공시규정 제105조	금융감독위원회 (공시감독국)	지체없이	자기주식취득신고서	기획실
4. 증권거래법시행령 제84조의3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경우	발행공시규정 109조	금융감독위원회 (공시감독국)	동일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결의로 부여한 선택권의 최초 행사에 대하여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날의 5일전	자기주식취득신고서	기획실

10. 합병, 영업 또는 자산의 양수·양도, 주식의 교환, 이전, 분할, 분할합병 관련사항

신 고 및 보 고 사 항	관 계 법 규	신 고, 보고처	신 고 기 간	비 고	담당부서
1. 상법 제374조(영업양수, 양도, 임대등), 제522조(합병계약서와 그 승인결의), 제527조의2(간이합병), 제527조의3(소규모합병), 제530조의2(회사의 분할, 분할합병) 및 530조의2(물적분할)에서 규정된 사실에 관한 결정이 있을 때	발행공시규정 제69조①17 공시규정 제7조①13, 45	금융감독위원회 (공시감독국) 증권선물거래소 (공시총괄팀)	사유발생 당일까지		기획실
2. 상법 제3편 제4장 제2절 제2관 및 제3관의 규정에 의한 주식교환 또는 주식이전의 결정이 있을 때	발행공시규정 제69조①14 공시규정 제7조①16	금융감독위원회 (공시감독국) 증권선물거래소 (공시총괄팀)	사유발생 당일까지		기획실
3. 합병계약을 체결하거나 이사회에서 합병을 결의한 때 (간이합병, 소규모합병 포함)	증권거래법 제190조의2 발행공시규정 제78조 공시규정 제22조	금융감독위원회 (공시감독국) 증권선물거래소 (공시총괄팀)	지체없이, 다만, 늦어도 주주확정을 위한 주주명부의 폐쇄 또는 기준일 공고일의 전일 까지	합병신고서	기획실
4. 중요한 영업의 양수, 양도의 계약체결하거나 그 사실에 관한 결정이 있을 때 (대상) -양수 또는 양도하고자하는 영업부문의 자산액(또는 매출액)이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또는 매출액)의 10%이상 -영업의 양수로 인하여 인수할 부채액이 최근 사업연도 부채총액의 10%이상 -영업전부의 양수	증권거래법 제190조의2 동 시행령 제84조의8 발행공시규정 제88조 공시규정 제22조	금융감독위원회 (공시감독국) 증권선물거래소 (공시총괄팀)	지체없이, 다만, 늦어도 주주확정을 위한 주주명부의 폐쇄 또는 기준일 공고일의 전일 까지	영업양수, 도신고서	기획실
5. 양수, 양도하고자 하는 자산액이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의 10%이상인 양수, 양도의 계약체결하거나 그 사실에 관한 결정이 있을 때, 다만, 일산적인 영업활동으로 상품, 제품, 원재료를 매매하는 행위 등 발행공시규정 제87조에서 정하는 자산의 양수, 양도를 제외함.	증권거래법 제190조의2, 동 시행령 제84조의8 발행공시규정 제88조 공시규정 제22조	금융감독위원회 (공시감독국) 증권선물거래소 (공시총괄팀)	지체없이, 다만, 늦어도 주주확정을 위한 주주명부의 폐쇄 또는 기준일 공고일의 전일 까지	자산양수, 도신고서	기획실
6. 다른 법인과 주식교환계약을 체결(주식이전의 경우에는 주식이 전계획서 작성)하거나 이사회에서 주식교환□이전에 관한 결의할 때	증권거래법 제190조의2, 동 시행령 제84조의8 발행공시규정 제91조 공시규정 제22조	금융감독위원회 (공시감독국) 증권선물거래소 (공시총괄팀)	지체없이, 다만, 늦어도 주주확정을 위한 주주명부의 폐쇄 또는 기준일 공고일의 전일 까지	주식교환, 이전신고서	기획실
7. 분할을 위하여 이사회 결의를 하거나 분할합병계약을 체결한 때	증권거래법 제190조의2 발행공시규정 제93조 공시규정 제22조	금융감독위원회 (공시감독국) 증권선물거래소 (공시총괄팀)	지체없이, 다만, 늦어도 주주확정을 위한 주주명부의 폐쇄 또는 기준일 공고일의 전일 까지	분할(분할합병) 신고서	기획실

9. 합병종료후 합병등기를 한때	발행공시규정 제86조 공시규정 제22조	금융감독위원회 (공시감독국) 증권선물거래소 (공시총괄팀)	지체없이	합병종료보고서	기획실
10. 등기등 사실상 영업 또는 자산의 양수·도를 종료한 때	발행공시규정 제90조 공시규정 제22조	금융감독위원회 (공시감독국) 증권선물거래소 (공시총괄팀)	지체없이	영업 또는 자산 양수·도 종료보고서	기획실
11. 주식교환의 날로부터 2주일 이내 또는 주식이전 등기를 한 날	발행공시규정 제91조의3 공시규정 제22조	금융감독위원회 (공시감독국) 증권선물거래소 (공시총괄팀)	지체없이	주식교환·이전종료보고서	기획실
12. 분할(분할합병) 등기를 한때	발행공시규정 제94조 공시규정 제22조	금융감독위원회 (공시감독국) 증권선물거래소 (공시총괄팀)	지체없이	분할(합병)종료보고서	기획실
13. 합병 및 영업양수·도등과 관련하여 주식매수청구가 있을 때에는 주식매수를 청구한 주주와 주식의 종류 및 수, 매수가격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주식매수가격 및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상장규정 제56조	증권선물거래소 (상장제도총괄팀)	지체없이		기획실
14. 합병·분할, 분할합병 및 자산·부채의 이전(영업양도 포함) 등으로 인한 신주상장신청, 변경상장신청	상장규정 제46조, 제49조, 제52조	증권선물거래소 (공시총괄팀)	신주나 채권 발행 후	자율공시	기획실
15. 회사의 합병, 영업의 양수·도, 분할, 분할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의 무효 또는 취소소송이 제기·신청되거나 그 소송에 대한 판결·결정사실	공시규정 제7조의3	증권선물거래소 (공시총괄팀)	사유발생 익일까지	자율공시	기획실
16. 자기자본의 100분의 5(대규모법인의 경우 1,000분의 25)이상을 출자(최근사업년도말 대차대조표상의 가액 기준)하고 있는 주권비상장법인이 발행어음, 수표의 부도, 은행거래정지 금지된 때, 회생절차개시신청 또는 법원의 회생정리절차 개시, 종결 또는 폐지 등의 결정사실을 통지받은 때, 상법제517조(해산) 및 그 밖의 해산사유가 발생한때(상법제227조제4호 및 제51조제1호의2 제외)	공시규정 제7조④4	증권선물거래소 (공시총괄팀)	사유발생 익일까지	자율공시	기획실
17. 타법인과 합병한 상장법인은 당해 법인의 외국인 주식 취득현황을 신고	증권업 감독규정 시행세칙 제7-13조	금융감독위장 (공시감독국)	즉시		기획실

※ 상법 제374조, 제522조, 제527조의2 및 제530조의3 규정에 관한 의결사항을 상법 제363조 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소집의 통지 또는 공고를 하는 때에는 증권거래법 제19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청구권의 내용 및 행사 방법을 명시하여야 함(증권거래법 제191조).

※ 상장법인과 비상장법인이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 비상장법인은 유가증권 발행인의 등록을 한 날로부터 2월이 경과한 후에 합병계약을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증권거래법 제190조).

11. 감사인 선임·변경 등 관련사항

신고 및 보고 사항	관계법규	신고·보고처	신고기간	비고	담당부서
1. 감사인을 선임·변경선임 또는 선정할 때	외감법 제4조의4	증권선물위원회 (회계제도실)	감사계약체결일로부터 2주 이내		기획실
	외감법시행령 제4조의3				
2. 감사인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여 감사인 선임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해임한 때	외감법 제4조의2	증권선물위원회 (회계제도실)	지체없이		기획실
	외감법 제4조의5	증권선물위원회 (회계제도실)	지체없이		기획실
3. 외감법 제4조의2에 의하여 해임된 감사인이 감사인선임위원회 에 의견을 진술한 경우	외감법 제4조의5	증권선물위원회 (회계제도실)	지체없이		기획실
4. 감사인의 해산등 사유로 사업연도중에 감사인이 교체된 경우 감사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사유가 기재된 서류 제출	외부감사 회계규정 제11조	증권선물위원회 (회계제도실)	지체없이		기획실
5. 증권선물위원회의 감사인 지정요건이 해소된 경우 지정요건 해 소관련서류 제출	외부감사 회계규정 제12조	증권선물위원회 (회계제도실)	지체없이		기획실
6.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결함재무제표작성회사로 통보를 받은 회 사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2주일이내에 결함재무제표에 대한 감 사계약을 체결하고, 그 체결내용을 보고	외감법 시행령 제4조의3	증권선물위원회 (회계제도실)	감사계약을 체결한 날 부터 1주일 이내		기획실
7. 결함재무제표 작성대상 기업집단 제외신청서	외부감사 회계규정 제3조	증권선물위원회 (회계제도실)	매년 4월말까지		기획실
8. 결함대상 계열회사 변동보고서	외부감사 회계규정 제5조	증권선물위원회 (회계제도실)	사유가 발생하는 날이 속하는 월의 익월말까 지		기획실
9. 다음 각 호의 지정관련 자료제출. 다만 감사인선임위원회(또는 감사위원회)에서 선임한 경우는 제외 (1) 당해 회사의 지배주주등의 소유주식 현황과 직전사업연 도 개시일 이후 당해 자료제출일까지의 대표이사 변동현황 (2) 지배주주등의 소유주식의 합계가 당해 회사의 발행주식총 수의 100분의 25이상인 경우에 직전사업연도 개시일 이후의 대표이사 변동현황이 기재된 법인등기부등본 (3)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5조제3항제28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 및 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서 사본	외부감사 회계규정 제18조	증권선물위원회 (회계제도실)	정기총회 종료일 후 2 주일 이내	증권위의 감사인 지 정을 위한 자료로 감 사인선임위원회에서 감사인 선임시는 해 당사항 없음	기획실
10. 당해 사업연도에 감사를 받아야 할 회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발생시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첨부.신고 (1)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이상을 출자한 때 (2)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부터 당좌거래의 정치처분을 받은 때 (3) 청산중에 있거나 1년이상 휴업중인 때 (4) 상법에 의하여 합병절차가 진행중인 회사로서 당해사업년 도내에 소멸될 예정인 때 (5) 상호, 결산기, 주소지 등을 변경한 때	외부감사 회계규정 제19조	증권선물위원회 (회계제도실)	지체없이		기획실

12. 공개매수 관련 사항

신고 및 보고 사항	관계법규	신고.보고처 (공시감독국)	신고기간	비고	담당부서
1. 공개매수를 하고자 하는 자는 공개매수신고서 제출	증권거래법 제21조의2 발행공시규정 제131조	금융감독위원회 (공시감독국)	공개매수 공고일	각 2부	기획실
2. 공개매수신고서를 제출한 때 그 신고서 사본 제출	증권거래법 제22조	증권선물거래소 (공시총괄팀)	신고서제출시 지체없이		기획실
3. 공개매수정정신고서	증권거래법 제23조의2 발행공시규정 제131조	금융감독위원회 (공시감독국) 증권선물거래소 (공시총괄팀)	공개매수기간이 종료 하는 날까지	각 2부	기획실
4. 공개매수철회신고서 제출 및 내용공고	증권거래법 제24조의2 발행공시규정 제131조	금융감독위원회 (공시감독국) 증권선물거래소 (공시총괄팀)	공개매수기간 개시일 전까지 (예외적 철회 : 법시 행령 제12조의7)	각 2부	기획실
5. 공개매수결과보고서	증권거래법 제27조의2 발행공시규정 제130조	금융감독위원회 (공시감독국) 증권선물거래소 (공시총괄팀)	공개매수 종료후 지체 없이	각 2부	기획실
6. 공개매수신고서가 제출된 주식등의 발행인이 그 공개매수에 관 한 의견을 표명한 경우	증권거래법 제25조 발행공시규정 제131조	금융감독위원회 (공시감독국) 증권선물거래소 (공시총괄팀)	지체없이	각 2부	기획실

13. 지주회사 관련사항

신고 및 보고 사항	관계법규	신고.보고처	신고기간	비고	담당부서
1 지주회사인 주권상장법인의 자회사가 새로이 편입 또는 탈퇴된 때	공시규정 제7조①17	증권선물거래소 (공시총괄팀)	사유발생 당일까지		담당부서 기획실
2 금융지주회사가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경영개선조치를 요구받은 사실	공시규정 제7조의3	증권선물거래소 (공시총괄팀)	사유발생 익일까지	자율공시	기획실
3. 지주회사인 상장회사는 그 자회사가 다음에 해당하는 사실 또는 결정이 있는 때	발행공시규정 제69조⑤	금융감독위원회 (공시감독국)			
(1) 지주회사의 모든 자회사 : 공시규정 제7조제1항제1호(어음 수표부도등), 제3호(회생절차 개시등) 또는 제6호(해산등)	공시규정 제8조	증권선물거래소 (공시총괄팀)	사유발생 익일까지, 다만, 지주회사의 자산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자회사가 공시규정 제7조제1항제1호(어음수표부도등), 제3호(회생절차 개시등) 또는 제6호(해산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유발생 당일까지		기획실
(2) 지주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 주식의 최근사업연도말 대차대조표상 가액(사업연도중 편입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가액)이 지주회사의 최근사업연말 자산총액의 100분의 100이상인 경우 : 공시규정 제7조 제1항 또는 제2항 각호의 1					
4. 지주회사인 주권상장법인이 당해 주권상장법인의 공정공시정보 제공자가 지회사의 공정공시대상정보를 공정공시정보제공대상자에 제공하는 경우	공시규정 제13조	증권선물거래소 (공시총괄팀)	당해 정보가 공정공시 정보제공대상자에게 제공되기 이전까지 (자회사의 범위는 지주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 주식의 최근사업연도말 대차대조표상 가액(사업연도중 편입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가액)이 지주회사의 최근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의 100분의 100이상인 자회사)		기획실

14. 해외증권 발행 및 해외증시에의 주권상정등 관련사항

신고 및 보고 사항	관계법규	신고·보고처	신고기간	비고	담당부서
1.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교환사채 또는 주식예탁증서(외국에서 이와 유사한 증권 또는 증서가 발행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발행에 관한 결정이 있을 때	발행공시규정 제69조①1나 공시규정 제7조①32가	금융감독위원회 (공시감독국) 증권선물거래소 (공시총괄팀)	사유발생 당일까지		기획실
2. 해외증권시장에 주권등의 상정을 추진하거나 이미 상정한 주권상정법인이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때 (1) 해외증권시장에 주권등을 상정하기 위한 결정이 있을 때 및 당해 주권등을 상정한 때 (2) 해외증권시장에 상장후 당해국 증권감독기관 또는 증권선물거래소 등에 기인내용을 정기 또는 수시로 신고, 공시하거나 보고서 기타 관련서류를 제출한 때, 다만, 국내 증권관계법령 및 이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공시하거나 제출사항과 중복되는 경우 제외 (3) 해외증권시장에 상장후 당해국 증권감독기관 또는 증권선물거래소로부터 매매거래정지 또는 상장폐지 등의 조치를 받은 때	발행공시규정 제69조①18 공시규정 제7조②9 발행공시규정 제69조①18	금융감독위원회 (공시감독국) 증권선물거래소 (공시총괄팀) 금융감독위원회 (공시감독국)	사유발생일 익일까지		기획실
3. 해외거래소 등에 주권 또는 주식예탁증서를 상장□등록한 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인 해외거래소 등이 소재한 국가의 법령 등에 의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신고서등을 그 거래소등에 신고 또는 제출한 때 (1) 발행공시규정 제69조에서 정하지 않은 주요경영사항 (2) 사업보고서등에 준하는 공시서류	발행공시규정 제69조⑥	금융감독위원회 (공시감독국) 증권선물거래소 (공시총괄팀)	사유발생 익일까지		기획실

15. 외국인의 국내 상장유가증권 매매거래 관련 사항

신고 및 보고 사항	관계법규	신고보고처	신고기간	비고	담당부서
1.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은 회계연도말을 기준으로 직접투자현황을 신고	증권업 감독규정 시행세칙 제7-13조⑤3	금융감독원장 (자본시장감독국)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의 회계연도말로부터 1월 이내		기획실
2. 외국인이 유가증권시장외에서의 양수도(신규직접투자, 유·무상증자 및 주식배당 포함)로 당해 직접투자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이 이를 신고	증권업 감독규정 시행세칙 제7-13조⑤2	금융감독원장 (자본시장감독국)	지체없이		-
3. 신규상장법인 또는 합병상장법인은 당해법인의 외국인 주식취득현황 보고	증권업 감독규정 시행세칙 제7-13조④	금융감독원장 (자본시장감독국)	즉시		기획실
4. 다른 법령 또는 정관에 의하여 외국인의 주식취득을 제한하는 법인은 그 내용을 신고(변경시에도 신고)	증권업 감독규정 시행세칙 제7-13조⑥	금융감독원장 (자본시장감독국)	지체없이		기획실

16. 신규상장회사 관련사항

신고 및 보고 사항	관계법규	신고, 보고처	신고기간	비고	담당부서
1. 주권예비상장 심사청구	상장규정 제9조	증권선물거래소 (상장제도총괄팀)	신규상장신청전		기획실
2. 주권신규상장 신청	상장규정 제17조	증권선물거래소 (상장제도총괄팀)	예비상장심사결과를 동반받은 후 모집, 매 출의 원요일까지		기획실
3. 주식의 대량보유등 보고(본인과 특별관계자가 주식들의 수의 합계가 당해 주식들의 총수의 100분의 5이상 보유하게 된 때)	증권거래법 제200조의2① 발행공시규정 제136조	금융감독위원회 (공시감독국) 증권선물거래소 (주감시부)	보유하게 된 날로부터 5일 이내	상장일 기준, 자사주는 연명보고	기획실
4. 임원 또는 주요주주(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 유하고 있는 경우가 된 날로부터 주식소유현황 보고	증권거래법 제188조⑥ 임원, 주요주주 소유상황보고규정 제3조	증권선물위원회 (공시감독국) 증권선물거래소 (주감시부)	상장일로부터 10일 이내		기획실
5. 최대주주등의 소유주식변동상황 제출	상장규정 제60조	증권선물거래소 (상장제도총괄팀)	상장후 지체없이	최대주주의 소유주식 변동신고서(8부)	기획실
6. 공시책임자, 공시담당자 선정, 통보	공시규정 제80조	증권선물거래소 (공시총괄팀)	상장후 지체없이		기획실
7. 우리사주 예탁 신청	증거법시행령 제2조의7	한국증권금융취 (우리사주조합부)	취득일로부터 1월 이내		기획실
8. 신규상장법인의 사업보고서등 제출	증권거래법 제186조의2	금융감독위원회 (공시감독국)	법정제출 기한내		기획실
9. 전자문서제출인 금감원 및 거래소 등록 (등록변경사항 포함)	발행공시규정 제152조, 세칙 제 19조, 제12조	금융감독원 (공시운영과)		filer.fss.or.kr에서 "전자문서제출인 등 록" 및 최신프로그램 다운로드	기획실

신고 및 보고 사항	관계법규	신고,보고처	신고기간	비고	담당부서
1. 증권관련집단소송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소송의 제기(상소를 포함한다). 허가신청, 소송허가 결정, 소송불허가결정, 소취하(상소취하 포함), 화해 청구포기(상소권포기 포함)의 허가신청, 결정 및 판결의 사실 등이 확인된 때	공시규정 제7조①23나	증권선물거래소 (공시총괄팀)	사유발생 당일까지		기획실
2. 증권상징법인이 발행한 상장 또는 상장대상 유가증권의 발행에 대한 효력, 그 권리의 변경에 관한 소송 등의 절차가 제기, 신청되거나 그 소송 등이 확정, 결정된 사실을 확인한 때	증권거래법 제186조 발행공시규정 제69조①2카(1)	금융감독위원회 (공시감독국)	사유발생 당일까지		기획실
3. 증권상징법인이 발행한 상장 또는 상장대상 유가증권의 발행에 대한 효력, 그 권리의 변경 및 그 유가증권의 위조 또는 변조에 관한 소송 등의 절차가 제기, 신청되거나 그 소송 등이 확정, 결정된 사실을 확인한 때	공시규정 제7조①23마	증권선물거래소 (공시총괄팀)	사유발생 당일까지		기획실
4. 대표이사 또는 본점소재지의 변경시 그 등기부등본 제출	상장규정 제55조5	증권선물거래소 (상장제도총괄팀)	지체없이		기획실
5. 최대주주, 주요주주 또는 계열회사가 변경된 사실이 확인된 때	발행공시규정 제69조①2타 공시규정 제7조②2	금융감독위원회 (공시감독국) 증권선물거래소 (공시총괄팀)	사유발생 익일까지		기획실
6. 유가증권에 관한 권리, 이익 또는 취급에 관한 중요한 사항의 결정	상장규정 제55조7	증권선물거래소 (상장제도총괄팀)	지체없이		기획실
7. 상장주권의 종목, 종류, 액면금액, 수량 등을 변경하였을 때 변경상장신청서 제출	상장규정 제49조	증권선물거래소 (상장제도총괄팀)	지체없이		기획실
8. 명의개서대행계약을 변경하거나 갱신한 때에는 등 계약서 사본 제출	상장규정 제58조	증권선물거래소 (상장제도총괄팀)	지체없이		기획실
9. 회계처리위반행위와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 (1) 당해법인이 외부감사및회계 등에관한규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선위로부터 검탈고발 또는 검탈통보 조치된 사실을 통보받은 때와 그 결과가 확인된 때 (2) 당해법인이 회계처리위반행위를 사유로 검탈에 의해 기소되거나 그 결과가 확인된 때, 다만, (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공시규정 제7조①20	증권선물거래소 (공시총괄팀)	사유발생 당일까지		기획실
10. 금융기관이 관계법규 또는 감독기관으로부터 경영개선신고, 요구 또는 명령을 받거나 경영개선협약체결 등 조치를 받은 사실	공시규정 제7조(2)의2	증권선물거래소 (공시총괄팀)	사유발생 익일까지	자율공시	-
11. 공시책임자, 공시담당자 변경 신고	공시규정 제80조	증권선물거래소 (공시총괄팀)	지체없이		기획실
12. 확정 공시한 후 당해 공시내용을 취소 또는 변경시	공시규정 제45조	증권선물거래소 (공시총괄팀)	사유발생 익일까지		기획실

13. 상정외국법인이 공시책임자, 공시대리인을 지정·변경하는 때	공시규정 제26조	증권선물거래소 (공시총괄팀)	지체없이	상정외국법인	-
14. 임원의 직무집행정지처분 신청 및 임원의 선임·해임을 위한 소수주주의 법원에 대한 주총소집허가의 신청 등 법인의 경영사항과 관련된 분쟁에 관한 소송이 제기·신청되거나 그 소송이 판결·결정된 사실을 확인한 때	발행공시규정 제69조①2카(4) 공시규정 제7조①23라	금융감독위원회 (공시감독국) 증권선물거래소 (공시총괄팀)	사유발생 당일까지		기획실
15. 기업설명회를 개최할 경우 일시, 장소, 설명회내용 등 신고	공시규정 제41조	증권선물거래소 (공시총괄팀)	즉시		기획실
16. 당해 법인이 발행한 주권을 상정폐지하기로 결정한 때	발행공시규정 제69조①20아 공시규정 제7조①18 상장규정 제77조	금융감독위원회 (공시감독국) 증권선물거래소 (공시총괄팀)	사유발생 당일까지	주총의사록	기획실
17. 공시의무사항 이외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한 사실 또는 결정내용	공시규정 제28조	증권선물거래소 (공시총괄팀)	사유발생 익일까지	자진신고공시	기획실
18. 외부감사인의 반기검토의견이 부적절, 의견거절인 때	공시규정 제7조①15	증권선물거래소 (공시총괄팀)	사유발생 당일까지		재경팀
19. 상장유가증권의 발행인이 사고증권(분할, 도난 또는 멸실 등의 사유로 그 점유를 상실하였거나 위조 또는 변조된 유가증권을 말한다)에 관한 신고를 접수한 때 및 통지내용에 변동이 있는 때 (다만, 명의개서대행회사와 명의개서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명의개서대행회사를 통하여 통지할 수 있음)	상장규정 제70조, 제71조	증권선물거래소 (상장제도총괄팀) 증권예탁결제원 (고객지원부)	지체없이	거래소에의 통지는 위조 또는 변조된 유 가증권의 경우에 한 함.	기획실

<p>20. 상장외국법인은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때</p> <p>(1) 공시규정 제7조(주요경영사항), 제8조(지회사의 주요경영사항) 및 제28조(자율공시)의 규정이 정하는 사항</p> <p>(2) 상장외국법인이 본국증권거래소(제3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경우 제3국증권거래소 포함)에 투자자에 대한 투자판단자료 제공을 위해 신고 또는 보고사항</p> <p>(3) 당해 상장외국법인의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본국의 법령등 증권관련제도의 변경</p> <p>(4) 상장외국법인의 주식에 대하여 본국(제3국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경우에는 제3국을 포함한다)에서 공개매수 또는 안정조작 등이 행해지는 때</p> <p>(5) 외국의 증권관계기관 또는 상장증권거래소로부터 관계법규 위반으로 조치를 받은 때 또는 매매거래정지□정지해제, 상장폐지 등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p> <p>(6) 거래소에 상장된 당해법인의 외국주식에특증서(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2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주식에특증서를 말한다)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결정이 있을 때</p>	<p>공시규정 제25조①</p>	<p>증권선물거래소 (공시총괄팀)</p>	<p>지체없이</p>		<p>-</p>
<p>21. 회사의 경영·재산 및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p>	<p>공시규정 제7조의3</p>	<p>증권선물거래소 (공시총괄팀)</p>	<p>사유발생 익일까지</p>	<p>자율공시</p>	<p>기획실</p>
<p>22. 장래계획에 관한 사항 또는 공시의무사항 외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하여 투자자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실의 발생 또는 결정</p>	<p>공시규정 제28조</p>	<p>증권선물거래소 (공시총괄팀)</p>	<p>사유발생 익일까지</p>	<p>자율공시</p>	<p>기획실</p>

[별표 2] 공정공시

1. 공정공시 관련사항

신고 및 보고 사항	관계법규	신고, 보고처	신고기간	비고	담당부서
<p>1. 주권상장법인은 공정공시정보제공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을 공정공시정보대상자에게 선별적으로 제공하는 경우</p> <p>(1) 장래 사업계획 또는 경영계획</p> <p>(2) 매출액, 영업손익, 경상손익 또는 당기순손익 등에 대한 전 또는 예측</p> <p>(3) 공시규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및 분기보고서(이하 "사업보고서등"이라 한다)를 제출하기 이전의 당해 사업보고서등과 관련된 매출액, 영업손익, 경상손익 또는 당기순손익 등 영업실적</p> <p>(4) 공시규정 제7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과 관련된 것으로서 그 신고사항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항</p>	<p>공시규정 제2장제2절</p>	<p>증권선물거래소 (공시총괄팀)</p>	<p>당해 정보가 공정공시정보제공대상자에게 제공되기 이전까지. 다만, 공정공시정보제공자가 경미한 과실 또는 착오로 제공한 경우에는 제공한 당일까지, 그리고 당해 주권상장법인의 임원이 그 제공사실을 알 수 없었음을 소명하는 경우에는 이를 알게 된 날까지</p>		<p>전체부서</p>

